

"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"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
제 목 :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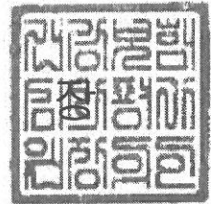
1. 관련 근거

-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-255호, 2020.09.28.)

2.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82호, 2020.10.30.)하고, 동 개정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「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-공고」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주요공고개정내역
2. 공고전문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결재 담당 이명현 부장 하성희 실장 김애련 전결 10/30

협조

시행 약제기준부-4464 (2020.10.30.) 접수 ()
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전화 033-739-1321 전송 033-811-7372 /enjoylmh@hira.or.kr / 공개

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 "행복의 전화 1644-2000"